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5항제8호, 제33조의3제1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, 정관 기재사항, 임원의 수 및 임기,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, “방재관리 대책대행자”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(안 제15조2)

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, 재해위험도 평가, 안전점검, 계측기술 연구 및 개발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

나. 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(안 제15조의3,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)

정관 기재사항, 임원의 수 및 임기,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

다.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(안 제15조의6)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, 사업 수행실적,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제15조의7로 한다.

제15조의3을 제15조의8로 하고,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협회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(이하“협회”라 한다.)의 업무 중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 따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급경사지 피해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 실시
2. 신규 급경사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, 점검 및 안전진단
3.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 지원
4. 급경사지 관리를 위한 계측기 설치·관리 및 계측기술 연구·개발
5.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
6.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등

제15조의3(협회의 정관 기재사항)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
6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
10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의4(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)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·부회장·이사 및 감사로 하되,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.

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.

제15조의5(협회의 감독 등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총회 또는 이사회的重要 의결사항

2.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

제15조의6(대행자의 선정 등)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, 사업 수행실적,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협회의 업무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) 한국급경사지안 전협회(이하“협회”라 한다.)의 업무 중 법 제32조의2제5항제8 호에 따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.</u> <u>1. 급경사지 피해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 사 실시</u> <u>2. 신규 급경사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, 점검 및 안전진단</u> <u>3.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 인조사 등 현장 지원</u> <u>4. 급경사지 관리를 위한 계측 기 설치·관리 및 계측기술 연구·개발</u> <u>5.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단체와 의 교류 및 협력</u> <u>6.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등</u>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3(협회의 정관 기재사항)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협회</u>

<신 설>

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사무소의 소재지

4. 사업에 관한 사항

5.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

6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8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9.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

10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의4(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)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·부회장·이사 및 감사로 하 되,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.

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
<신 설>

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
에서 정한다.

제15조의5(협회의 감독 등) 협회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
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
2.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
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
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
하는 사항

<신 설>

제15조의6(대행자의 선정 등) ①
관리기관이 법 제33조의2제2항
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
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
는 자의 능력, 사업 수행실적,
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
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
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
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
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한다.

<u>제15조의2</u> · <u>제15조의3</u> (생략)	<u>제15조의7</u> · <u>제15조의8</u> (현행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57